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153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관세 납세신고 관련 명의도용자 및 명의대여자 대상 벌칙 강화 (정태호의원안)	2

I. 개요

1.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15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태호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12. 31.

(3) 회 부 일 : 2025. 1.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의 회피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벌 대상이 되는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 모두 세무행정과 조세질서를 교란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범법적 행위로서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의 형량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의도용자 및 명의대여자 모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의3).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관세 납세신고 관련 명의도용자 및 명의대여자 대상 벌칙 강화 (정태호의원안)

법률 제20608호 (현 행)	개정안
☐ 명의대여행위죄 등* 처벌 (§275의3) * 관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기 명의 대여 또는 타인 명의 사용하는 행위 ○ 처벌대상 - 자기 명의대여·타인 명의사용 납세 신고 시 - 타인 명의사용 탁송품·우편물 수입 시* * 탁송품·우편물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명의도용 처벌 목적 ○ 벌칙 - 자기 명의대여*: <u>1년</u> 이하 징역 또는 <u>1천만원</u> 이하 벌금 * 탁송품·우편물 수입은 제외 - 타인 명의사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 벌금	☐ 벌칙 강화 ○ 처벌대상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벌칙 강화 - 자기 명의대여*: <u>2년</u> 이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 벌금 * 탁송품·우편물 수입은 제외 - 타인 명의사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 벌금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태호의원안 2024. 12. 31. 발의(의안번호 7153)

☐ 개정안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의 회피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납세를 신고하거나 탁송품·우편물을 수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율하려

는 것임.

- 현행법은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①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②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거나 탁송품·우편물을 수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¹⁾.

이는 2024년 12월 개정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관세법」(법률 제20608호)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 이전에는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명의대여행위죄 등(법 제275조의3) 처벌규정 비교]

구 「관세법」	법률 제20608호 (현 행)	개 정 안
○ 처벌대상		
- 자기 명의대여·타인 명의사용 납세 신고 시	- (좌 동)	- (현행과 같음)
- <추 가>	- 타인 명의사용 탁송품·우편물 수입 시	- (현행과 같음)

1) 「관세법」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

②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관세법」	법률 제20608호 (현 행)	개 정 안
○ 처벌형량		
- 자기 명의대여*: <u>1년</u> 이하 징역 또는 <u>1천만원</u> 이하 벌금 * 탁송품·우편물 수입 제외 - 타인 명의사용*: <u>1년</u> 이하 징역 또는 <u>1천만원</u> 이하 벌금 * 탁송품·우편물 수입 <u>제외</u>	- (좌 동) - 타인 명의사용: <u>2년</u> 이하 징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 벌금 * 탁송품·우편물 수입 <u>포함</u>	- 자기 명의대여*: <u>2년</u> 이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 벌금 * 탁송품·우편물 수입은 제외 - 타인 명의사용: <u>2년</u> 이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 벌금 * 탁송품·우편물 수입 <u>포함</u>

□ 그런데, 처벌 대상이 되는 ‘자신의 명의대여’나 ‘타인의 명의사용’ 모두 세무행정과 조세질서를 교란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범법적 행위로서,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의 형량을 차별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2024년 12월 개정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현행법 이전에는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한 바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의 회피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납세를 신고하거나 탁송품·우편물을 수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동일한 형량을 적용받도록 하되, 벌금 한도를 현행 대비 1천만원 상향하여 3천만원 이하로 규정

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명의대여 등을 처벌하고 있는 유사 법률과의 법적 정합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조세범처벌법」²⁾ 및 「지방세기본법」³⁾ 모두 일관되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의 벌칙 규정도 상기한 유사 법률과의 법적 일관성을 감안하여 2024년 12월에 개정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상의 명의 대여 행위 처벌형량]

법령명	처벌행위	처벌형량
조세범 처벌법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기 명의의 사 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106조(명의대여 행위 등) ①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명	처벌행위	처벌형량
	도록 허락한자	
지방세 기본법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 을 허락하거나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관세사법」 4), 「철도안전법」 5) 등의 입법례에서는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형량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관세사법」 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관세사로부터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통관업을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5) 「철도안전법」 제24조의3(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철도차량정비 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7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2. 제24조의3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차량정비 경력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 둘째, 개정안과 같이 동일한 형량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징역형에 따른 벌금형의 법정형 결정기준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법률안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 지침) 제45조(법정형)에 따르면, 벌금형의 일반적 기준을 징역형 1년당 1천만원으로 제시하되,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가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동 법은 2025년 1월부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상향되었으므로, 형량 상향 이후 범죄 예방효과, 실효성 및 비례성 등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9